

웅지세무대학교	보 건 실 규 정	문서번호	5-2-03(E)-0
		제정일자	11.01.01
		최근개정	15.04.01
		주관부서	학생처
		홈페이지공개	보건의실 공 개

웅지세무대학교 학생처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본실의 명칭은 웅지세무대학 보건실(이하 “보건실”이라 한다.)이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웅지세무대학교 보건실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업무) 보건실은 본교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관리와 진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시행한다.

1.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상담
2. 각종 질병의 예방과 보건교육
3. 간단한 외상치료 및 응급약 투약
4. 각종 의료기기 및 의약품 구입관리
5. 기타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

제2장 구성

제4조(조직·자격) 보건실에는 보건교사 1인을 두며, 보건교사는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.

제5조(보건시설) 보건실은 본 대학 내에 설치하고 학교 보건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.

제6조(교직원 건강검진)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교직원에 대한 건강 검사는 “국민건강보험법”제 47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7조(학생 건강검진) 본교 기숙사 입관 전에 건강검사를 실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공동생활 및 전염성 질환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.

제8조(학생 및 교직원 보건관리)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후송 및 질병 치료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 지정 의료기관을 둘 수 있다.

제9조(학교지정의료기관) 학생 및 교직원들이 질병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 시 병원시설, 진료비

혜택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이용이 수월하며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자가 간호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학교와 지정 병원 간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0조(예방접종)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에게 전염병의 정기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학교의 보건교사를 접종요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(의료기구 관리) 의료 기구는 보건실내에 설치하도록 하며 보수, 유지 관리한다.

제12조(의약품구입 및 관리) 보건실내 구급약 및 치료용 재료 등이 계속 유지 공급 되도록 점검하고 관리한다.

제13조(구급함 지급) 학교 내·외 행사시 응급약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보건관리 기록) 보건실을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의 상담, 처치가 끝나고 나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기록 관리한다.

제3장 재정

제15조(재정) 보건실 의 재정은 본교의 보조금, 학생의 보건비, 기타 수입으로 한다.

제16조(예산 결산) 보건실의 예산·결산은 교학처의 예산에 편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<개정 2015.04.01.>

제17조(회계년도) 보건실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
부 칙 <1판-제정/시행 2011.01.01.>

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판-개정/시행 2015.04.0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규정의 개정)

1. 제16조 “운영위원회”를 “교학처 예산에 편성하여”으로 개정하다.